

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연구윤리 지침

제정 2024. 12. 2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(이하 ‘개발원’)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「포용과 사회통합 연구」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거나 개발원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 및 그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,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본 규정은 본 개발원에 논문을 투고·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을 편집·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연구윤리 위반행위)

- ① “위조”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“변조”라 함은 연구자료, 연구과정,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“표절”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과정,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⑤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

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.

- ⑥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.

제2장 저자 연구윤리

제4조(연구윤리의 준수)

- ①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,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(표절)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재료, 장비,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·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.
- ③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기술하여서는 안 되며,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또는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(또는 편집위원)의 심사 의견을 간소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이들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해야 한다.

제5조(저자의 책임)

-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.
-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(역자)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.

제6조(인용 및 참고의 표시)

- ① 저자가 공개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,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,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
-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(참고)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, 또한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·주제·해석인지를 명시해야 한다.

제3장 편집위원회 연구윤리

제7조(편집위원(회)의 책임과 차별 금지)

- ① 편집위원(회)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지며,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 편집위원(회)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, 나이, 소속 기관,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 등에 차별하지 않고,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.
- ③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한국학술지 인용색인(KCI)의 논문 유사도검사를 통해 유사도를 검사하고, 유사도가 30%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심사의뢰 시에 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심사위원의 선정)

-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.
- ②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.
-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제4장 심사위원 연구윤리

제9조(심사의 성실 이행)

- ①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(회)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, 편집위원(회)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.
- ③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,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.
-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,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,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심사위원의 비밀 엄수)

-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.
- ②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.

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

제11조(목적)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2조 (연구윤리위원회 구성)

- ① 논문집의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개발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③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13조 (연구윤리위원회 임무)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① 논문 투고자들에게 운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
- ②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규정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

제14조 (연구윤리위원회 운영)

-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,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-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/3 출석과 출석위원 2/3 찬성으로 한다.

제15조 (윤리규정 위반의 제소)

- ①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-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투고자는 본 개발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)

-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②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.
- ③ 연구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 (제재)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.

- ① 본 개발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(표절로 판정된 경우 3년간 투고금지)
- ②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사실 공시 및 인터넷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
- ③ 부정행위 후 발간되는 첫 논문집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

제18조 (규정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9조 (기타)

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칙 <제정 2024. 12. 23.>

이 지침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